

# 서울교육대학교 와 (주)크레스 의

## 산학협력 양해각서

서울교육대학교와 (주)크레스는 양 기관의 자율성과 다양성을 존중하고, 교육환경이 시대 변화와 함께 긍정적으로 변화할 수 있도록 국내 에듀테크의 발전과 글로벌화를 위해 다음 사항에 대해 상호 협조하도록 노력한다.

**제1조(목적)** 본 양해각서는 국내 에듀테크의 발전과 글로벌화를 위해 서울교육대학교와 (주)크레스(이하 '양 기관' 이라 한다)의 상호 교류와 협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**제2조(기본원칙)** 양 기관은 상호 협력하여 공동 연구 및 사업을 추진하는 데 있어 제 규정을 존중하고 호혜평등의 원칙을 준수한다.

**제3조(협력분야)** 양 기관은 다음의 사항들에 대해 상호 협력함은 물론 이를 발전시키도록 노력한다.

1. 양 기관은 학교 현장에 도움이 되는 교육 서비스 개발과 교육적 효과 연구를 위해 상호 협조한다.
2. (주)크레스는 서울교육대학교 학생들을 위한 비즈니스 및 기술 관련 경험을 제공한다.
3. 서울교육대학교는 (주)크레스가 개발하는 교육서비스가 국내 학교 현장에 도움이 되고 글로벌화 될 수 있도록 조력한다.

**제4조(비밀엄수)** 본 양해각서와 관련된 활동을 통하여 습득한 상대 기관의 비밀 사항을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공개하지 않는다.

**제5조(협정기간)** 본 양해각서의 협정기간은 체결일로부터 3년간으로 한다, 또한 유효기간 만료일 1개월 전까지 협정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효력은

자동적으로 1년씩 연장된다.

제6조(협정의 변경 및 해지) 양 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협의에 의하여 협정 사항을 변경할 수 있다. 단,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협정이 해지된다.

1. 양 기관이 협약 해지를 합의하였을 경우
2. 어느 한 기관의 협약 위반으로 다른 기관이 협약 폐기를 서면으로 통보한 후 1개월이 경과한 경우
3. 단, 이 협약이 해지된 경우에도 상호 협력이 진행 중인 사항은 유효한 것으로 본다.

제7조(법적효력) 본 양해각서는 제4조의 비밀엄수 의무를 제외하고 양 당사자에 대한 어떠한 법적 구속력도 가지지 않는다.

제8조(효력발생) 양 기관은 양해각서에 날인하여 각각 1부씩 보관하며, 양해각서의 효력은 양 기관이 서명한 날로부터 발생한다.

제9조(기타) 본 양해각서에 명시하지 아니한 사항 또는 해석상 의의가 있는 사항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.

2018. 12. 26.



서울교육대학교  
총장 김경성

김 경 성



(주) 크레스  
대표 최상아

최 상 아